

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194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5. .
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립역량 부족으로 주 돌봄자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수요가 높아짐.
- 나. 주간보호센터를 신규 개소함으로써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- 다. 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1) 위 치: 마장로 318, 1층~2층
- 2) 시설내역: 지상1~2층, 연면적 330.42m²

층	운영시설(안)	면적(m ²)	직 원	이용대상
1층	집단활동실, 휴게실, 야외텃밭 등	165.21	센터장1 직 원3 (예정)	성인발달장애인
2층	사무실, 조리실, 소규모활동실 등	165.21		

3) 소요예산: 365,904천 원(구비 100%)

- 나. 연간 운영예산: 286,084천 원(인건비, 사업비, 임차료, 관리비 포함)
 - 근무인력: 4명 이내(센터장 포함)

다. 주요위탁 내용

- 1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5년
 - 「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(시설의 위탁)
- 2) 신청자격: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- 3) 위탁내용: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규 시설 관리 및 센터 운영
- 4)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(비상설)에서 심의·선정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의 역량 필요
- 2) 역량 있는 민간 법인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
- 3) 민간 자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용이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
- 4) 구 직영으로 인한 행정의 비대화, 운영의 경직성 및 비효율 예방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
- 2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

나. 예산조치

- 1) 운영예산: 연간 286,084천 원(구비)
 - ※ '23년 위탁비 240,904천 원(운영비, 실내공사비, 가구 및 장비구매비)
- 2) 세부내역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
- 3) 예산확보: '23년 본예산 확보

[관계 법령]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